

제 447 호

1974.5.27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양택식

편집: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소

전화 75-6090

# 시보

차 례

제 850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공인조례	3
제 851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칙 무대립조례중개정조례	8
제 852호	• 임근모자회관 설치조례 개정조례	8
제 853호	• 무위가진물청리사업보조중개정조례	11
제 1372호	서울특별시 동강인사규칙중개정규칙	11
제 1373호	• 사유재산신탁회규칙중 개정규칙	12
제 63호	비토채조영업허가취소	12
제 65호	도시계획시설(내버스주차장) 결정및지적승인	13
제 66호	하천정용(공작물설치) 허가	13
제 93호	도봉구및관악구보건소장 공인공고	14
제 94호	주택개발을위한채개발 사업실시공고	16
제 95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법정자검정필요명령개정	18
제 96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김포신림)	18
제 97호	분묘이장공고	19
제 98호	분묘이장공고	19

## 사 경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류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어에 공포한다.

1974. 5. 1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감 하결정

◎ 서울특별시조례제 850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공인조례

제정 74. 5. 17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구청, 사업소, 각급학교, 회계관계공무원 기타 각종 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종류 및 비치) ①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회계기관, 자문기관등 각종 위원회는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③전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④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

용할 수 있다.

제 3 조 (규격 및 글씨) 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 과 같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 4 조 (각인) ①청인에는 관서명을 직인에는 관서명과 그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민원사무전용공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글 굵고 "민원사무전용"이라 표시한다.

제 5 조 (교부 및 등록) ①공인은 별표 2 의 공인교부기관에서 새겨 이물 교부한다. 다만, 사립학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공인교부기관은 별지 제 1 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대장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 6 조 (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파멸되거나 기타 경신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당초에 교부받은 기관에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이를 당초에 교부받은 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또는 폐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인대장은 이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에는 교부기관이 이를 판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인관수자) 공인관수자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교육감직인 (민원사무전용 직인 포함) 사무과 주관계장
2. 본청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 재무과 주관계장
3. 교육구청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교육구청 관리계장
4. 사업소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사업소 사무과장
5. 각급학교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사무책임자
6. 각종 위원회의장인 - 주관과 주관계장

제 9 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직무시간 이외의 직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하여 두어야 한다.

제 10 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위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명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제 11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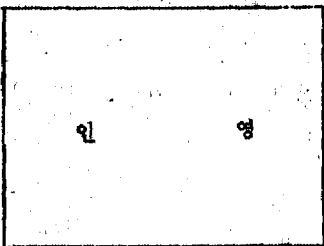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비치사용하는 공인은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에 의한 공인으로 보며,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대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작성된 직인대장은 이로써 가용할 수 있다.

(별표 1) <u>공 인 의 급 격</u>			
직 위 의 구 분		규 격	비 고
1. 기관장의 직인			
가. 1급공무원이상의직위(대학장포함)		2.7 센치미터	
나. 2급공무원의직위(중등학교장포함)		2.4 "	
다. 3급공무원의직위(초등학교장포함)		2.1 "	
2.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가.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및 그 본인자.		2.0 "	
나.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본인자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1.8 "	
3. 각종 위원회의 청인		3.6 "	
(별표 2) <u>공 인 교 부 기 관</u>			
구 분	교 부 기 관	비 고	
1. 교육감(민원사무건용에 한함) 교육구청장, 사업소장, 고등학교장 및 각종위원회의 공인	교육감(서무과장)	사립학교제의	
2. 국민학교장 및 중학교장의 공인	교육구청장(관리과장)	"	

(제 1 호서식)

공 인 대 보 장

기 관 명



종 류		점 인	
새 건 날	년 월 일	폐 기 한 날	년 월 일
새 건 사 람		폐 기 사 유	
제 토		인 의 형 상	
적 요			

(제 2 호서식)

공 인 의 신 조 ( 개 각 ) 신 청 서

수신 : 교 육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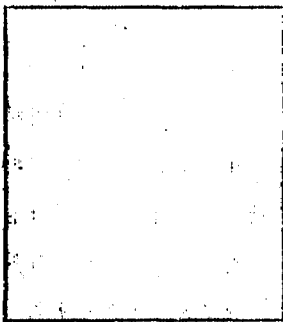
년 월 일

신 청 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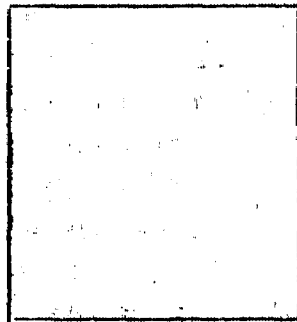
①

1. 이 유	
2. 규 격 및 글씨	
3. 공 인 명	
4. 사 용 계 시	
5. 비 치 처 및 관 수 자	

공 인 의 모 형



(원)



(복)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직무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5. 1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하경생

◎ 서울특별시조례제 851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직무대리조례중개정조례

개정 1974.5.17

제1조 내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한다)의 직무대리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교육위원회의 직제(이하 "영"이라한다)제3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2조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모두 사모가 있을 때에는 영 제5조에 규정된 국의 순서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피대리기관의 관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피대리기관의 평인과 대리자의 인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사명문서에는 대리자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설치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장

1974년 5월 22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852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  
설치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설치목적) 시내에 일정한 거처가 없는 영세근로자에게 숙박실 및 기타의 후생시설을 제공하여 자활의 기쁨을 마련하게 하며, 직업안정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권장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2 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회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 3 조 (직무)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숙박실 및 기타의 후생시설운영
2. 구직자에 대한 무료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

제 4 조 (입소신청등) ①회관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신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구직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5 조 (수용인원) 회관에 수용할 인원의 정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조 (입소기간) 입소자의 회관사용기간은 180 일 이내로 한다.

제 7 조 (질서유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은 퇴소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규칙 및 지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할 때  
2. 수용정원을 초과할 때  
3. 회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8 조 (사용료) 입소자로부터 다음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용료 납부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송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숙박료 1인 1박 10 원
2. 식사대 1인 1식 10 원
3. 이발료 1인 1회 15 원
4. 목욕료 1인 1회 10 원
5. 기타사용료 실이

제 9 조 (사용료납부방법) 사용료는 회회 선납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무원) ①회관에 관장을 둔다. 관장은 지방행정추사로 보한다

②관장은 회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명을받아 관무를 총리하의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③관장이외에 두는 공무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p>제 11 조 (위탁경영) ①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조건과 감독하에서 회관의 운영 또 는 회관내의 일부시설을 위탁 경영 하지 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경우에는 경영자로 부터 그 시설의 평가액의 100분의 6이</p>	<p>내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p> <p>제 12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p> <p>부 칙</p> <p>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회 관 명 칭 위 치 및 관 할 구 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시립 동대문근로자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산 45	종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천호출장소
시립 남대문 근로자회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1가 69	중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은평출장소
시립 영등포근로자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3-76	영등포구, 관악구, 양서출장소, 영등출장소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무허가 건물정비사업보조금 지급조  
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5. 2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조례제 853 호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  
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보  
조금지급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1 호 및 제 2 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한다.

1. 무허가건물이라함은 1970.6.20  
현재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기  
존무허가건물과 재산세의 납부등  
으로 공부상 1970.6.20 이전에 존  
립하였다는 확증이 있거나 1970년  
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주거용 기존무허가 건물을  
말한다.

2. 건물의 정비라함은 건축물의 구  
조물과 그 부속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전호의 무허가건물이  
재해등으로 완전히 손괴 또는 멸

실된것을 말한다.

제 3 조제 1 항제 1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 5. 22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규칙제 1372 호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중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시행령 제 4 조의"를 "지방자  
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 제 3 조  
의 2 의 규정에의한"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규칙 시행당시의 동장  
은 이규칙에 의하여 임명된것으로 본  
다.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심의회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 5. 22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규칙제1373호

서울특별시시유재산심의회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시유재산심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사) 심의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관제과 재산감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관제과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63호

비료제조영업허가취소

다음과같이 비료제조영업 허가취소하였기 비료단속법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4. 5. 21

서울특별시장

허가번호	허가도시는확고부일	생산업자의 주소성명 및 제조공장 소재지	비료명칭	보증성분량	기타규격
1-1	1972.9.11	1. 생산지 주소성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84 선창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해수  2. 제조장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답십리동 184  나. 부산시부산진구 감만동 51의 10	규산질비료 2 호  규산질 3 호  혼 합 유 박	가용성규산 25% 구용성고토 2% 알카리 15 %  가용성규산 15% 구용성고토 5% 알카리 30 %  질소건량 인산또는가리건 량외 2 종이상합 계량 7 %	유하성분의조다 합유량 니켈 0.5% 크롬 5% 타탄 3%  분말도 10 사목 10% 통과 100사목 50% 통과  2종유박이상의 혼합된것.

◎ 서울특별시고시제 65 호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 주차장)결정및지적승인

- 1. 당시의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 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색은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5.25.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 조서

명 칭	위 치	면 적	이 고
시내버스주차장	성동구양재동 35-7 , 35-8	3,562.8 ( 776.6명)	동성교동주식회사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66 호

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

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물 하천법 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한다.

1974. 5.25.

서울특별시

- 1. 허가년월일 : 74.5.25.
- 2. 위치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 5번지앞하천(홍제천)

- 3. 목적 : 통로사용을 위한 교량설치

- 4. 점용면적 : 132㎡

- 5. 규모 : 길이 24 미터

폭 5.5 미터

- 6.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4개월

- 7. 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년월일

착공 : 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준공 :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내

- 8. 피허가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영동 219-11

서성원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93 호

도봉구 및 관악구  
보건소장출인공고

서울특별시 조례 제 828 호( 74.4.  
8 )로 서울특별시립보건소 설치조례

1. 신조공인사용일자: 1974. 5. 20. 09:00

2. 공인의 인영

중 개정조례의 공포에 따라 서울특별  
시 신설 서울특별시립 도봉구보건  
소 및 관악구 보건소장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신조하여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  
한다.

도 봉 구 보 건 소 장 인



관 악 구 보 건 소 장 인













도 봉 구 보 건 소 계 인



관 악 구 보 건 소 계 인



<p>도봉구부인장리본인</p> 	<p>분악구부인장리본인</p> 
<p>도봉구부인지출본인</p> 	<p>분악구부인지출본인</p> 
<p>도봉구부인수입본인</p> 	<p>분악구부인수입본인</p> 
<p>도봉구부인물품출납본인</p> 	<p>분악구부인물품출납본인</p> 
<p>도봉구부인지출회합본인</p> 	<p>분악구부인지출회합본인</p> 

◎ 서울특별시공고제 94 호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실시공고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승인(3-7)의 9개구역에 대한 주택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사업인가 신청한바 건설부고시제 145

호(74.5.13)로 인가되었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주택개발 2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3. 사업개요

가. 사업명: 동대문구승인의 9개구역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나. 사업인가구역: 위치 및 면적

구역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3-7	승인구역	동대문구승인동 58번지일대	57,901㎡
4-7	금호제 2구역	성동구금호동 4가산7및 용봉동산7번지일대	123,880
5-6	돈암제 3구역	성북구돈암동산 6, 9, 11, 80번지일대	267,684
6-28	북아현제 2구역	서대문구북아현 3동 113및 중정로산 6번지일대	14,989
7-4	아현제 2구역	바포구아현 2동 596번지일대	154,887
8-9	서빙고제 1구역	용산구서빙고동 187 외 2번지일대	11,828
9-2	북석제 2구역	관악구북석동산 88번지일대	97,180
6-7-1	홍은제 5구역	서대문구홍은 1동 71, 113번지일대	244,294
6-46	원저제 3구역	서대문구원저 1동 746번지일대	151,524
9-17	교척구역	영등포구교척동 62번지일대	28,723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

월일: 인가일로부터 76.6.30까지

나. 시행자: 서울특별시청

4. 유의사항

가. 지구내 행위제한

구역내 토지는 사업실시기 간중

(공사)에 사업발행상 도시계획

법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가

사용케하므로 관리처분 및 정지 공사가 완료되기전까지는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 변경등을 함하며 상기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분양신청

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장에 새 로이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 제 39 조)

- 1) 자기 사유지상에 자기소유 건축물이 있는자 소유자 본인이 분양신청한다.
  - 2) 타인 사유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가 분양신청한다.
  - 3) 국공유지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 현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한다
- ※ 주거용건물에 한한다 (단 농공건물 소유자는 예외)

다. 분양신청제외대상

- 1) 부지 및 가로계획에 계속된 국공유지상의 무허가건축물소유자
- 2) 면적 100 제곱미터 이상 고지대에 있는 사유토지
- 3) 무허가건축물 전세입자

라. 분양신청서 첨부

해당 동사무소에서 무로배부

마. 분양신청장소

해당 구청주먹과 (출장소는 전설과)

바. 분양신청서 첨부서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증명서류

사. 분양신청을 무효으로 하고자할 때 : 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무효으로 하여야 한다.

5. 이상의 공고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것이나 송달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4. 5. 20.

서울특별시 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제 95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채정자금집행요령중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채정자금  
집행요령중 다음과같이 개정공고한다.

1974. 5. 21.

서울특별시장

가. 개정내용

제8항 나. 붙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전항에 의한 용자대상업체 선정은  
용자신청자가 있을때마다 수시 선  
정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공고 제 96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일부  
변경공람공고 (김포 신림)

1. 당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  
가. 사업계획변경조서

업지구중 김포지구 및 신림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일부를 다음과같이  
변경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4조 및 동법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  
람공고한다.

2. 판제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  
획정리 1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김포공  
랑토에 지축되는 토지소유자와 신  
림지구 시장용지와 인접한 토지소  
유자에게는 별도통지할 것이나 통  
지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서 갈  
음한다.

1974. 5. 22.

서울특별시장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변 경 내 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김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영동포구내발산동 81 외발산동 5번지 구간	21,054명	북40도면 장 1,740피	제 칙	본사업지구 에서 제외
신림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관악구 봉천동 381구획	1,000명	시장용지	일반주거 용 지	

첨부 : 판제도면 (생략: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구획정리 1과 보관)

○ 서울특별시공고제 97 호

본 묘 이 장 공 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금천 시공중인 천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사구역내에 매장된 분묘에 대하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16 조 및 동법시행규칙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이장대상지역

가. 성동구성내동산 3, 산 4, 산 6 - 3, 산 6 - 4, 산 6 - 5

나. 성동구길동, 천호동, 성내동, 명일동, 둔촌동 일대로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2. 이장기간: 74. 5. 23 ~

74. 6. 23 (1개월간)

3. 분묘연묘자신고기간:

74. 5. 23 ~

74. 6. 23 (1개월간)

가. 묘지연묘자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2 과 ( 75-6290 ) 또는 현장감독관사무실 ( 55-1323 ) 에 출두하시어 분묘등록과 동시에 이장하시기 바라며 이장후 소경의 이장비를 수명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기간내 이장하지 않은 분묘

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당시에 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장하겠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게 바랍니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구획정리 2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4. 5.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98 호

본 묘 이 장 공 고

당시에서 시공중인 창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에 매장분묘에 대하여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15 조 및 제 16 조제 2 항과 동법시행규칙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대상지역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산 108, 산 109, 산 110, 산 115, 산 114, 산 117, 산 120, 산 126, 산 233, 산 228, 산 230, 산 231, 174, 146, 149, 150 일대 창동산 192, 산 193, 산 194 일대

2. 연묘자는 반드시 당시 도시계획국구획정리 1 과 또는 위사업울 주관하는 공사현장감독관사무실에 비

최된 관계도서상 연고분묘가 사업지  
역내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포  
합되었으면 이장신고를 필한후 이장  
하여 주시고 이장완료후 소정의  
보상비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신고 및 이장기간:

1974.5.23 ~ 1974.6.23 (1개월간)

4. 만일 위기간내에 이사업지구내 소

재한 분묘를 이장치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당시에서 매  
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정  
하는 바에 따라 임의 이장하겠읍  
니다.

1974. 5. .

서울특별시

자 명

◎ 1974. 5. 1

에비군 부대대장 임철현

서울특별시청에비군대대장에 임함.

◎ 1974. 5. 16

성북구 지방행정 보진소 사무관 이복용

도봉구보진소 신설준비담당관

근무를 명함.

◎ 1974. 5. 17

성동구 지방행정 주 지방행정사 이성훈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 정종만  
보진소 주사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은명출장소 지방행정 무계권  
서기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은명출장소 지방행정 서영규  
서기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성동구 지방행정 서기보시보 어갑경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토목과 지방토목사 김학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토목과 지방토목사 이대우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4.5.20	이윤재
이순수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부산시주재 지방건축 건설사업소 기원보시보
의약과 근무를 명함.	조순영
박경옥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건축기원보시보에 임함.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1호봉을 급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	김영선 영선과 지방건축 기사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시민회관파견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영선과 지방건축 기사보시보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박종기
유귀덕 영선과 지방건축 기사보시보	시민회관파견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영선과 지방건축 기사보시보
1호봉을 급함.	양용호
마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시민회관파견 근무를 명함.
정영애 영선과(5.31과 지방건축 지공보상내상대 기사보 건설요원파견)	입방택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74.6.1부터 시민회관파견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영선과 지방건축 기사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이재호
	시민회관 결무를 명함.

영선과 지방전기 시민회관 검무를 명함.	이영주	서대문구 지방건축 기원보시보 김철수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주택건설과 지방전기 시민회관파견 근무를 명함.	경영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3월에 처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기계 기사보시보	김용구	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견제성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영선과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기계 기사보시보	최화영	규정에 의하여 감봉6월에 처함.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 사무	최용만	마포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신위식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부녀과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사무	김용웅	규정에 의하여 전책에 처함. 용산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시정개발담당관실 파견 (74.5.20- 74.11.19) 근무를 명함.		중구보건소 지방수의 사 보 최용수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 1974.5.21 공원과 (공원 관리계장 직무대리) 지방농림 사무	이태근	규정에 의하여 감봉3월에 처함. 도봉구 지방토목 기사보 한걸수
동대문구 녹지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동대문구 (녹지과장 직무대리) 지방농림 사무	김수원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책에 처함.
공원과 공원관리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토목 기사 이무방
◎ 1974.5.23 서대문구 지방보건 보건소 기사보	김형태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1월에 처함. 영등포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 김정봉
마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p>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영동포구 지방포목 수도사업소 기원 이 중 기</p>	<p>○ 1974.5.25 경기도경북군 지방보건 보건소 기원 박승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규정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 마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동포구 지방포목 수도사업소 기원보 이 동 기</p>	<p>지방보건기원에 입함. 6호봉을 급함.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 관악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p>	<p>○ 1974.5.27 오세연</p>
<p>서대문구 지방포목 안상명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포목 홍병찬</p>	<p>지방의무기과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장에 보함.</p>
<p>토목시험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포목 사업소 기원 진재원</p>	<p>이승익 지방의무기과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p>
<p>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포목 기원 김명열</p>	<p>영동포구보건소 보건지도과장에 보함. 경기도안양시 지방의무 보건소 기과 김병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 1974.5.24 로목과(은영) 지방포목 합성소(관동) 기원 이 중 하 현에 의하여 고직을 면함.</p>	<p>지방의무기과내 입함. 4호봉을 급함. 성동구보건소 전호지소장에 보함.</p>
<p>성북구 지방포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박후근 내무부 전출을 명함.</p>	<p>중로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사 이길환 용산구보건소 방역과장 직무 대리를 명함.</p>

<p>환경과 지방보건의사 종로구보건소 방역과장 직무대리를 명함.</p>	<p>한승현 김완준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p>
<p>○ 1974.6.1 지방기계기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주대건설과 근무를 명함.</p>	<p>이영재 권혁두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p>
<p>지방화공기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연료과 근무를 명함.</p>	<p>최장호 유영애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p>
<p>지방약기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양길석 이신화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오류부녀보호지도소 근무를 명함.</p>
<p>지방토목기사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p>	<p>최인호 신명숙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p>
<p>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p>	<p>이승형 권옥주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p>

